

부산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6나6580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6나658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가단2075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씨엔피인베스트

피고, 피항소인A

변론종결 2017. 11. 3.

판결 선고 2017. 12. 8.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가단2075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2015. 3. 13.부터 위 철거 완료일까지 연 2,125,3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지료를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판단

1) 법정지상권 불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구 주택이 헐리고 이 사건 주택이 신축되었으므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을 그 후 개축·증축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건축·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그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 및 범위 등은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는 제한만 받는 것인바(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48517, 48524, 48531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정지상권 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존속기간은 저당권 설정 당시 또는 이 사건 구 주택의 철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피고의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이미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이는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이다. 따라서 그 존속기간 역시 물권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그 성립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2015. 3. 13. 이 사건 주택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취득시점으로부터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존속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한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전제로 지료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취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료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관하여 당심은 2017. 9. 26.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하는 석명준비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2010. 10. 10.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고도 청구취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각하한다.

재판장판사이일주

판사안희경

판사박병주